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주장과 권성동 의원의 주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차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3
1.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3
2. 바른정당의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1.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높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검찰과 법무부의 도입 저지 활동도 활발해짐.
 - 대표적으로 2017년 1월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 법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문서를 배포한 바 있음.
 - 그 연장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회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3일에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며 공수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론화시키려 했음.
 - 이런 배경 속에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애초의 사회적 예상과 달리 공수처 도입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그만큼 공수처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검찰과 법무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이 재확인되고 있음.
- 아래에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그를 비판하고자 함.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주장은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1) 대검찰청은 공수처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 ” 라고 주장함

- ① 대검은 “정치이슈를 대화, 타협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는 수사만능주의 풍토 하에서 곧 정쟁의 장이 될 것”이며, “대립이 심한 정치현실에서 언제든지 국정통제, 정적제거 수단으로 (공수처가) 활용” 될 수 있으며, “법무부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과 달리 아무런 통제·견제를 받지 않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고 주장함. 더 나아가 “대통령이 처장만 장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욱 악화” 된다고 주장함.
- 지금의 검찰이야말로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음. 이를 반면교사 삼아, 공수처의 경우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리고 공수처 소속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 등의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인 만큼, 검찰의 비판처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비판임.
- 특히 대통령이 공수처장만 장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더욱 악화된다고 하는데,

지방검찰청장 및 검찰총장 같은 이들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완벽히 장악한 현실을 개선해 공수처장 임명의 실질적 권한을 국회가 합의하에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검찰의 비판은 어불성설임.

- 이런 주장(대통령이 처장만 장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악화)을 지난 2월 7일 바른정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그대로 반복하며 공수처 도입을 비판한 바 있음. 검찰의 잘못된 주장을 바른정당이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② 대검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수처장 등이 퇴임 후 일정 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지만 “정계진출은 제한이 없어 정치적 사건 편파수사 후 정계진출을 도모할 수도 있음”이라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 그동안 검찰총장 등의 퇴임 후 공직취임 제한을 완강히 반대해온 것이 검찰이라는 점, 그리고 검사들이 퇴직 후에 곧장 정계에 진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검찰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함.
- 다만 국회에서 입법심의를 하면서 공수처장 등의 퇴임 후 일정기간 정계진출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결코 힘든 일도 아닌 만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에서 해당 부분이 부족하다고해서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부당함.

2) 대검찰청은 공수처를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고 주장함

① 대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함에도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까지 활동한 12차례 특별검사팀(법률 개수로는 11개 특검법)¹의 경우에 행정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행정부 소속으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결정한 바가 단 한 차례도 없음.

② 대검에서는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음.

- 그러나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되는 곳이라는 점, 국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보고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헌재 국회 제출법안들), 공수처 구성원들 또한 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아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

1 역대 개별 특검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총 11개이며, 1번 특검법의 경우 2명의 특검이 각기 활동하여, 특별검사팀은 총 12팀임. 1)조폐공사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의 옷로비 특검법(1999) - 이 특검법의 경우, 각 사건(파업유도와 옷로비사건)별로 특검이 1명씩 임명되었음, 2)이용호게이트 특검법(2001), 3)대북비밀송금 특검법(2003), 4)노무현측근비리 특검법(2003), 5)사할린유전개발 특검법(2005), 6)삼성 특검법(2007), 7)이명박-BBK 특검법(2007), 8) 스폰서검사 특검법(2010), 9)디도스선관위공격 특검법(2012), 10)이명박내곡동사저 특검법(2012), 11)박근혜게이트 특검법(2016)

(현재 국회 제출법안들) 등을 고려했을 때,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라고 과장하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부당함.

- 무엇보다도 공수처 구성원들의 직권남용이나 부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조사가 가능한 만큼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기관으로 과장하는 것은 부당함.
- 물론 국회의 입법심의과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인 공수처장은 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처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면 보완하면 될 것임.

3) 대검찰청은 공수처를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 라고 주장함

① 대검에서는 2014년(19대 국회)에 도입된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제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동된 특별검사팀 또는 수사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실패한 제도임이 확인되었음.
- 2014년 2월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세월호참사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인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 등이 있었으나,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제는 무용지물이었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제는 무용지물이어서, 불가피하게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임.
- 즉 2014년의 특별검사제는 실패한 제도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임.

② 더 나아가 대검은 권력기관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검찰과 나란히 존재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임.
- 따라서 검찰이라는 조직 위에 있는 조직(옥상옥)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바깥에서 검찰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건을 우선 담당하게 하는 조직(옥외옥)에 해당함.
- 그리고 대검에서는 사정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또는 두 기관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노력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 만큼, 공수처 도입 반대 이유가 될 수 없음.

4)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수처 도입 법안들이 “전 세계 유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20년간 폐기된 법안”이라며 주장함

- ① 한국에서 공수처 도입 법안이 15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출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사실임.
 - 그런데 지난 20년간 그런 과정이 반복된 이유는 검찰과 검사들로 가득 찬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었지,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검찰이나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학계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음.
 - 검찰이 지난 20년간 공수처 도입을 좌절시킨 주역이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과거 폐기된 법안임을 강조하는 것을 염치가 없는 주장임.
- ② 한편 대검은 해외 사례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우선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선진국도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내세울 비판 근거는 아님.
 -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소권을 1개의 검찰조직 외 다른 기관이 동시에 가진 사례가 해외에 많지는 않음. 그러나 영국의 사례(일반사건과 강력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SFO(Serious Fraud Office) 별도 존재)처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2개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지 않음.

5) 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수처가 “상시 사찰기구화 또는 무능한 수사기관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 ① 검찰은 공수처 구성원의 경우 “정기인사가 없어서 동일 보직에 장기 근무함에 따라 당연히 부패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함.
 - 우선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 부서이동과 근무지 변동이 잦은 검찰의 경우는 부패가 없는 것 인지 먼저 반문해보아야 함. 즉 정기인사 여부와 동일 보직 근무기간이 부패 차단 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무엇보다도 공수처 구성원들의 부패는 그 자체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상호견제가 가능한 조건에 놓여있음.
 - 현재의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의 부패는 검찰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고(이른바 ‘셀프수사’),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임. 반면 공수처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공수처와 검찰(또는 경찰) 간에 상호 견제와 수사가 가능해져, 두 조직 구성원들의 부패발생 가능성도 낮아지고 부패가 적발되었을 때 처리 과정도 더 공정해질 것임.
- ② 또 대검은 공수처가 무능한 수사기관이 되기 쉽다고 비판함.

-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검찰에서도 2015년 포스코 비리 수사, 2016년 롯데그룹 수사처럼 시작은 화려했지만 결과는 미약했던 ‘무능한 수사’가 반복되었음.
- 무능한 수사 문제는 공수처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검찰이라고 해서도 피해질 수 없는 문제임. 따라서 공수처만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공수처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함.
- 검찰을 포함하여 공수처의 경우에도 무능하지 않은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한 여건, 예를 들어 수사 능력 확보 또는 인사권을 쥔 세력에 의한 무리한 수사 강요로부터의 보호 등의 여건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공수처 운영 과정을 거치며 계속 보완할 수 있을 것임.

6)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로는 모든 정치적 사건을 공수처가 맡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 ① 모든 정치적 중대 사건을 다 공수처가 맡지 않는다고 해서, 공수처가 불필요하거나 검찰개혁과 무관하다는 것은 엉뚱한 비판임.
 -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개혁방안은 아님
 -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검찰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위함이며, 또 검찰만이 독점한 기소권을 일부 사건에서는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견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
 - 더 나아가 공수처의 존재는 검찰 스스로에게 자기의 위상과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자극제가 되어, 검찰을 바로세우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방안임.
 - 공수처 도입은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과 기소권한을 검찰만 아니라 공수처에도 부여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에 대한 검찰독점 체계를 바꾸어 권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시정할 것임.
 - 물론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에 관한 특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정치적 (중대) 사건’을 다 맡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확대 가능한 것이며, 지금 꼭 그렇게 확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임.

7) 법무부는 “참여연대 선정 검찰권 남용사례” 들은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도 수사대상이 되지 못한다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①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선정한 검찰권 남용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어도 공수처가 문제가 되는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무부가 이 비판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참여연대 선정 검찰권 남용

사례는 검찰과 법무부의 입맛에 맞는 일부 사건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임.

-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5년간 검찰권 오남용 사건으로 선정한 것은 모두 13가지였음.
- 그런데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2017년 1월중에 배포한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이라는 자료에서 단 6가지만 언급했음(광우병 관련 PD수첩 오남용 사건/정연주 전 KBS 사장 매입사건 / 미네르바 사건 /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 집시법 사건 / 전교조 시국선언 및 정당 가입 사건 /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 취그림 사건).
- 법무부가 제시한 이들 6개 사건은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검찰의 권한남용 수사 사례로 참여연대가 지목한 것이었음. 이 사건들은 공수처 도입을 위한 명분으로 참여연대에서도 제시한 적이 없는 사건들임.

② 반면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시절에 검찰이 봐주기하거나 부실하게 끝냈었다고 선정한 권력형 부패사건 사례들은 묵살하였음.

-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실 및 봐주기 수사 사례인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용산지역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건은 쏙 빼놓았음.
- 박근혜 정부 검찰주요 수사 사례도 법무부가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검찰과 법무부 입맛에 맞는 사건만 제시하고, 참여연대가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선정한 최경환 부총리의 취업청탁 사건, 성완중 뇌물리스트 사건, 경찰 물대포 공격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은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 자료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음.

③ 법무부라는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입장에 불리한 결정적인 사례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례들을 슬쩍 끼워넣기 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인 것임.

2. 바른정당의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 지난 2월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정을 위한 개혁을 늦추거나 거부 하겠습니까” 라며 검찰의 자정 능력을 호소하였으며, 검찰총장 임기 4년제(현행 2년제)를 통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부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의 인사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국민의 수사참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치적 중요사건이나 검사 비리 사건 등의 수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하기,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공수처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래에서는 바른정당을 대표하여 권성동 의원이 밝힌 공수처 반대 주장을 소개하며 이를 비판하고자 함.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2월 7일 기자회견 당시 권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임(국회방송 참고)

1)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은 “공수처는 기존 검찰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시대착오적 방안” 이라고 주장함

- ① 공수처를 도입하자는 방안은 공수처의 책임자 또는 그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임.
-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기관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임.
 - 예를 들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중에는 국회가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책임자가 검찰총장과 다른 경로로 임명되도록 제도를 제안하고 있음
 - 참여연대가 19대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던 상설기구로서의 특별검사제에서도 국회 추천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총장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비판은 지난 1월에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포한 공수처 비판 문건에 실려 있는 주장과 동일함.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됨.

2)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대신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념의 검찰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① 그 방안으로 △ 중요 사건 수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설치를 제시함.

- 검찰위원회 구성을 검찰민주화 또는 검찰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핵심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정당에서 2월 7일 발의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실제 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현재의 검찰시민위원회를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우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건은, 해당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가 판단하여 검찰위원회에 심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상급자인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를 받은 검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과 이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음. 즉 검찰이 위원회 회부할지 말지를 완벽히 장악한 구조인 만큼 검찰의 의중을 벗어난 사건이 심의될 가능성은 없음.
- 다음으로 배심재판처럼 무작위로 선정되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볼 수 없는 간접방안에 그침.
- 또한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간사’ 역할을 검사가 담당하고 있어, 검찰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위원회임.
- 또 수사의 주체인 주임검사는 본인이 원하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반면, 그 외의 사건관계자들은 의견진술 신청을 할 방법도 없으며 위원회에서 허락해서 진술할 수 있는 제한된 구조임. 그리고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핵심인 ‘사건설명서’는 주임검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어 검찰의 영향력 하에 있음.

② 이 방안은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검찰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 효과를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검찰시민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제안임.

- 도리어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은, 검사와 검찰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더 악용될 것인 만큼 검찰개혁방안이라고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이런 방안 때문에 공수처 도입을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음.

3)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도입 대신에 특별검사 발동요건 의무화 등 특검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함

①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 및 검사장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검사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음.

- 우선 특별검사 수사개시 의무화 대상을 그리 좁게 할 이유가 없음. 검사장에 이르지 않은

검사들, 경찰간부들, 행정 각부의 장·차관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외의 비서관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이나 국정원 간부 등의 부패와 권한남용 행위를 배제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방안임.

②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이 제안한 방안의 더 큰 문제는 사건이 드러나면 그 때서야 특별검사팀이 구성되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기존 한시적 또는 개별 특별검사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임.

- 검찰과 법무부가 공수처를 비판하는 (부당한) 논거 중의 하나가 능력 있는 수사기관인가에 대한 의문인데, 사건이 터지면 그 때 그 때마다 특별검사팀을 새로 구성하려하면 능력 있는 수사팀 구성도 쉽지 않음. 그러다보니 매번 검찰의 지원, 구체적으로는 파견검사를 수십 명씩 받아야만 함. 그래서 검찰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음
- 게다가 수사의 생명은 ‘타이밍(timing)’ 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이 웬만큼 세상에 드러난 다음에 수사해서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음. 즉 증거은폐나 인멸이 진행된 다음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해서는 진상규명도 쉽지 않음

③ 따라서 현행 특별검사제도를 일부 수정하자는 권성동 의원과 바른정당의 방안은 공수처 도입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될 수 없음. [참]

참여연대 정책자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

발행일 2017. 2. 16.

발행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